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윤 영 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문제의 제기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다. 그 발달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법과제도의 수립이 기술발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면서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융합함에 따라 생겨난 사이버 공간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일찍이 풀(I. de sola Pool)이 간파했던 것처럼 PC 통신의 사이버 공간은 표현의 자유를 한층 확대해 주는 기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 새로운 매체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1)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치, 교육, 학술, 문화에 관련된 공공정보뿐만 아니라 상품적 가치가 높은 오락정보가 거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다. 라디오가 처음 등장했던 1920 년대에 라디오전파의 자유로운 이용이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듯이, PC 통신이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1930 년대에 이르러 라디오가 규제를 받기 시작했듯이, 매체에 대한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줄 수 있는 PC 통신에 대한 규제의 당위성이 조금씩, 그리고 신중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공공 선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공동체주의자들은 외설과 욕설,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찬 사이버 공간이라면 규제를 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의 접근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PC 통신매체의 경우 내용규제의 필요성 여부와 그 방법의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도입하고자 했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이 비록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일단 보류되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내용규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속도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외의 몇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법률적 문제로 비화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민주적 담론형성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물론 매스미디어의 경우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정보나 의견은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매스미디어 차원의 규제논리를 PC 통신이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이버 공간을 제공해 주는 PC 통신매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II. 사이버 공간의 이중성 :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PC 통신은 통신매체로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대중매체(매스 미디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PC 통신 이용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적인 정보를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교환할 수 있으며, 공공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상황에서 토론을 벌일 수도 있다. 전자우편을 통한 개인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자의 경우이며, 게시판이나 토론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의가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

특히 PC 통신상의 사이버 공간은 매스 미디어처럼 한꺼번에 여러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하며, 그 공간 가운데 일부를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스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용자가 게재한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많은 이용자들이 그러한 정보에 대해 반응하고 자신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뉴스 미디어처럼 일종의 여론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들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동일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PC 통신은 이 두 유형의 커뮤니케이션간에 존재해 왔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PC 통신은 매스 미디어의 환경에서 불가능했던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한다 정보흐름의 쌍방향성, 익명성, 매체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의 확대, 경제성 그리고 시공의 초월성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매체보다 훨씬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PC 통신을 통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가능케 해 주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보다 거리낌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의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접근이 용이한 편이므로 기존의 대중매체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로 엘리트층만을 정보원으로 삼는 매스 미디어와는 달리, 정보전달 창구가 모든 이용자들에게 폭넓게 열려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PC 통신을 이용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시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활발히 정보와 의견을 유통시킴으로써 가상공간에서도 여론형성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은 통신이용자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개방된 매체라고 하겠다. 실제로 많은 통신이용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견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 의견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PC 통신은 하버마스가 제기하고 있는 공론권(public sphere)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²⁾

이 사이버 공론권은 원칙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현재에는 내용규제를 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매스 미디어 공론권보다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저널리즘의 영역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사이버 저널리즘은 극단적인 소수의 의견까지도 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성을 띠고 있다. 특히 권력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통제의 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자체검열이 적용되는 뉴스 소재일수록, 이러한 통제와 검열을 피해갈 수 있는 사이버 저널리즘은 더 큰 활기를 띠는 측면이 있다. 일례로, 거리에서의 투쟁을 통해 매스 미디어 공론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전략을 펼쳐왔던 운동집단은 그들의 활동을 외면하는 매스 미디어에 기대하기보다는 PC 통신이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을 장악하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PC 통신을 조직 내 혹은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운동집단의 상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부나 정당, 기업 등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정치세력들간의 이념논쟁과 정치토론을 위한 공간이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홍보(publicity)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컴퓨터통신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형성에 필수적인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전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텔레데모크라시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III. 사이버 공간의 내용규제에 관한 논란

PC 통신이 전화처럼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경합하는 공론권을 제공하는 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용규제의 문제를 야기한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며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PC 통신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PC 통신의 이러한 특성은 게재물에 대해 내용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정보가 유용한 정보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쓰레기성 정보가 대량으로 양산되었을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정보공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³⁾ 정부의 사이버 저널리즘에 대한 규제는 방송 저널리즘에 준하는 규제논리에 입각하여 가상공간에 대한 접근권을 억제하거나 내용자체를 검열, 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⁴⁾

우선 PC 통신을 통신매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매체(선로)는 규제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내용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부의 검열과 감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29 개국은 1997 년 7 월에 개최되었던 '인터넷 유럽회의'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반대하고 인터넷 사용과 운영을 민간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인터넷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은 공적 성격을 점차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인신공격적이고 외설적인 표현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신문과 방송 등에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매스 미디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PC 통신에도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기소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규제금지를 주장하는 측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 모두 사이버 공간에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악의에 찬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방안의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하는 측은 이러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외부의 개입이나 검열에 의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규제에 의한 냉각효과(chilling effect)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절을 중시하는 '네티켓'(네티즌의 에티켓)을 지키고 건전한 가상공동체문화를 창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서 불건전 정보를 추방할 수 있는 자체 정화능력을 기른다면 정부의 규제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규제론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보장이라는 원칙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사법적 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욕설로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며, 인터넷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시물이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당연히 규제의 대상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게재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인터넷 내용규제를 한 국가(미국)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각국이 나름대로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내용규제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거리는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통신서비스업체를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통신서비스업체를 서점이나 도서관과 같은 일종의 유통업자(distributor)로 간주하거나 전화회사처럼 수동적 정보전달자로 본다면, 게재물의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업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자가 매스 미디어와 같은 정보제공자나 출판업자(publisher)로 인식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서비스업자는 후자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용약관에 자율적 내용검열에 대한 동의조건을 삽입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문제는 미국의 대법원이 최근 음란정보 등 불건전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한 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외설, 폭력적 정보를 게재하거나 전송한 이용자들에게 최고 2 년의 징역과 25 만 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이 담긴 통신품위법은 미국의 네티즌들과 정보제공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각국의 사이버공간 규제법이 과연 타당한가를 따지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면 음란정보를 포함한 '불온정보'를 올린 사업자나 개인은 사업취소 및 1 년 이하의 징역과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규정에 의해 최근에는 한국계 모델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한 국내 이용자가 형사 처벌되기도 했다.⁶⁾

IV.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1. 전자우편과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자우편은 두 이용자들만이 열어보는 개인적 서신 뿐만 아니라 수신자명단을 작성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서신도 포함한다.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서신은 후자의 경우이지만, 전자의 경우도 명예훼손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인들간의 사적 서신에 근거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정보가 사이버 공간 상에 떠돌 때 그러한 우편을 발송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의 한 보험 회사는 경쟁사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사이버공간에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무려 45 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만 했다.

물론 전자우편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내용이 사이버 공간에서 소문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한 내용을 게재한 가해자가 탐지되기 마련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은 1984 년 데이터보호법을 통과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이용자(기업)는 자신이 발송한 모든 전자우편을 공개하여야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조직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우편을 공개함으로써 영업상의 비밀까지도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8월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게재물의 명예훼손을 쟁점으로 하는 첫 소송이 제기되었다. 엘렉스컴퓨터는 컴퓨터 판매업에 뛰어들어 유공해운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Elex Company Fucking'이라는 욕설을 게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⁷⁾ 인터넷도 대중매체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공해운 측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일어난 사고이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명예훼손에 관한 시비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광고성 전자우편의 경우에도 야기될 수 있다. 비교광고기법을 사용하여 경쟁사제품을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우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2. 전자회의실에서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1997년 5월 일본 동경의 지방법원은 전자회의

실에 게재된 메시지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한 여성 이용자에게 그 피해가 인정되며, 따라서 그녀를 비방하는 메시지를 게재한 남성회원에게는 40 만엔, 서비스제공회사(Niftyserve)와 회의실 운영업체 그리고 운영책임자에게 공동책임을 물어 10 만엔을 지급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판결했다.⁸⁾

문제가 된 메시지는 그 여성회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성격이 비뚤어져 있으니 이혼을 했다' 혹은 '범죄자' 등의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가 개인공격적인 색채가 매우

강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 있는 다수의 회원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고의 게재물은 이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의 이 판결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PC 통신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한 일본 최초의 판결이므로 향후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만하다. 둘째, 회원의 발언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회의실 운영책임자의 검열강화로 인해 게시물의 삭제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토론이 활기를 잃게 될 수 있다.

일본의 Niftyserve 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외설적인 발언을 일삼고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그와 관련된 게재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자회의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방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시와 검열에 반대하는 통신운동단체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치토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PC 통신을 선거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통신이용자들은 특정후보자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게재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PC 통신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이용자에게 대해 정치인의 인격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이들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로 간주한 것인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정치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뒤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1996 년 야당의 대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통신공간에 올렸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고등법원에서는 문제가 된 비방내용이 해당정치인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근거로 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다. 따라서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의도의 명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7년 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에 대한비방죄로 구속된 통신이용자에 대해서도 통신운동단체, 검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몇몇 통신이용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6.25 당시 공산군이었으며 동료를 배신한 기회주의자'라는 글을 77 차례, 특정정당에 대한 욕설을 114 차례, 후보들간의 관계를 성관계에 비유한 글 21 차례 게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공선법의 위반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들의 행동이 공정선거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경찰의 통신이용자들에 대한 구속조치에 동조하고 있다.⁹⁾

이 사건에 대해 통신운동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정치토론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구속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통신언론탄압"이라고 항의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사람들만이 통신공간에 게재된 글을 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선거법이 규제하는 '후보자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다소 과도한 비판일지라도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함으로써 공론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V. 자율규제와 사이버 문화의 역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PC 통신의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 대중 매체의 성격을 지니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문제라고 하겠다. 사이버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무한정의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이 아니므로 개인의 인격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신중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편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적 공론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면서, 명예훼손의 적용을 통한 내용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욕설이나 비방은 검열이나 규제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말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상호적대적인 글을 비교하여 양측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PC 통신은 신문과 방송 같은 대중매체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신문과 방송에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것처럼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일단 사이버 공간에서도 개인의 명예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조하면서 후자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실정법에 따라 비방적인 글을 올린 통신이용자를 구속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방법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지 모르지만 PC 통신의 발전과 전자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정법에 의한 강압적인 제재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위한 규칙과 문화적 규범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업체나 시스템운영자에게 명예훼손의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게시물을 엄격히 검열해야 하므로 표현의자유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보다 많은 운영자를 고용함으로써 규제 비용이 늘어나 결국 그것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¹⁰⁾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말을 이용자 스스로가 자제하고 정화하여 토론방이나 게시판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가운데 건전한 토론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가상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이 생겨날 것이다.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토론에 참여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서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 다양한 수준과 유형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예로 경고, 삭제, 접근제한 등의 벌칙을 마련해 놓은 서비스제공업체의 이용약관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PC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계층과 취향의 이용자들을 위해 점차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상공동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규칙을 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칙을 수립해 놓은 통신공간에서는 속어나 비어를 사용해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엄격 한 규칙을 적용하는 통신공간에서는 그러한 글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공간 내에서 다양한 사이버 문화가 형성되는 추세에 따라 자율규제도 특정 가상공동체의 가치관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율적 규제가 개인의 법익(명예)과 사회적 법익(표현의 자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원칙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자율적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통신공간의 의사소통 규칙과 윤리를 무시하고 위반을 일삼는 경우나 이용자들간의 갈등이 운영자에 의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적 판결에 의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법적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법적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명예훼손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통신서비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게시판이나 토론방처럼 통신업체가 이용약관을 통해 차단이나 삭제의 권한을 가질 경우 통신업체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영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이나 일본의 판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역으로 통신내용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는 서비스영역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시물을 모니터 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신업체는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통신업체는 더욱 엄격하게 통신내용을 모니터 할 것이며, 그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검열을 통한 삭제나 차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광대한 통신공간에서 유통되는 문건들을 일일이 모니터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통신이용자들 스스로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공동체문화를 확립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주

- 1) Pool, I. de Sola (1983). Technologies of freedom.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2) Habermas, Jurgen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MIT Press.
 - 3) 윤영철 (1996). 사이버스페이스와 정치변동. 《언론사회문화》제 15 호. 23-40 쪽.
 - 4) 윤영철 (1997) 정보사회와 텔레데모크라시: 쟁점과 전망. 이현조, 최정호 공편. 《커뮤니케이션의 유토피아? : 정보화와 한국인의 삶》, 23-40 쪽.
 - 5) 《한겨레신문》 1997 년 7 월 10 일자, 6 면.
 - 6) 《중앙일보》 1997 년 7 월 9 일자, 30 면.
 - 7) 《조선일보》 1997 년 8 월 24 일자, 31 면.
 - 8) 《경향신문》 1997 년 6 월 3 일자, 26 면.
 - 9) 《한국일보》 1997 년 10 월 22 일자, 27 면.
 - 10)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1996) 《정보통신 검열 백서》. 113 쪽에서 인용.
-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 미국 뉴욕주립대 사회학 석사, 미네소타대 언론학 박사
 - 미네소타대 연구원,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저술 : 지배권력과 언론(역), 한국사회변동과 언론(공저)